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31 선고 2023가단9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8978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31 선고 2023가단940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23. 7. 20.

판결선고 2023. 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6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2018. 2. 26.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가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6. 원금 250,000,000원, 이자 65,000,000원 합계 3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가 이자로 받은 65,000,000원은 당시 시행 중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24%를 적용하면 $1,315,068\text{원} (= 250,000,000\text{원} \times 0.24 \times 8\text{일}(2018. 2. 26. \sim 2018. 3. 6.) \div 365\text{일, 원 미만 버림})$ 에 불과한데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63,684,932원 $(= 65,000,000\text{원} - 1,315,068\text{원})$ 을 초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이자 63,684,9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8. 30,000,000원, 2018. 2. 12. 40,000,000원, 2018. 2. 26. 25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8. 3. 6. 원고로부터 합계 315,000,000원을 변제받아 아직 원금조차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예금거래내역서 기재와 같이, ㉠ 2018. 1. 8. 30,000,000원, ㉡ 2018. 2. 12. 40,000,000원, ㉢ 2018. 2. 26. 250,000,000원, ㉣ 2018. 3. 13. 80,000,000원, ㉤ 2018. 6. 4. 140,000,000원 합계 5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예금거래내역서 기재와 같이, ㉠ 2018. 3. 6. 277,000,000원, ㉡ 같은 날 13,000,000원, ㉢ 같은 날 25,000,000원, ㉣ 2018. 4. 16. 80,000,000원, ㉤ 2018. 5. 11. 100,000,000원, ㉥ 2018. 5. 30. 5,000,000원, ㉦ 2018. 6. 7. 1,000,000원, ㉧ 2019. 3. 19. 5,000,000원, ㉨ 2019. 8. 23. 2,000,000원, ㉩ 2019. 9. 11. 200,000원, ㉪ 2020. 6. 26. 2,000,000원, ㉫ 2020. 12. 31. 1,501,800원 합계

511,701,8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의 부당이익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의 2018. 2. 26. 무렵 원고에 대한 대여금은 250,000,000원에 한정되고, 원고가 2018. 3. 6. 피고에게 315,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과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별도의 차용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2018. 2. 26. 무렵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250,000,000원에 한정되고, 원고가 2018. 3. 6. 피고에게 315,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018. 1. 8. 30,000,000원, 2018. 2. 12. 40,000,000원 역시 대여금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8. 3. 6. 피고에게 지급한 315,000,000원 중에 ‘이자’ 명목의 돈이 ‘65,000,000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별지]

예금거래내역서(갑 제3호증, 원고 명의 계좌)

조회기간	2018.01.01 ~ 2020.12.31			종목명	자유저축예탁금	
관리점		가액지점		발행점		상리지점
■ 검색조건						
입/출구분	입금+출금		금액조건		전체	
검색기록사항			검색연동계좌번호			
■ 거래내역						
[단위:]						
거래일자	시간	환오신금액	환기신금액	납은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2018-01-05	10:25:43		30,000,000	30,001,500	대입	
2018-02-12	12:34:06		40,000,000	40,000,000	대입	
2018-02-26	11:57:05		250,000,000	250,442,360	대입	
2018-03-06	11:06:53	277,000,000		20,041,260	대입	
2018-03-06	11:11:55	13,000,000		7,041,260	대입	
2018-03-06	14:41:12	25,000,000		5,041,260	대입	
2018-03-13	15:27:06		80,000,000	82,059,218	대입	
2018-04-16	10:10:57	80,000,000		23,535,136	대입	
2018-05-11	15:27:04	100,000,000		3,469,210	대입	
2018-05-30	19:52:24	5,000,000		22,887,510	스미트당행	
2018-06-04	14:38:57		140,000,000	161,827,990	신입	
2018-06-07	15:42:48	1,000,000		3,874,480	스미트당행	
2018-03-19	21:43:52	5,000,000		1,569,776	CD입금	
2019-06-25	14:46:48	2,000,000		2,853,097	CD입금	
2019-09-11	10:37:20	200,000		5,065,094	CD입금	
2020-06-26	17:20:45	2,000,000		3,343,630	CD입금	
2020-12-31	16:02:16	1,501,800		7,997,627	IC출금	

